

#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         |  |      |           |
|---------|--|------|-----------|
| 심의일시/장소 | 2022. 9. 7.(수), 14:00 / 서소문 제2청사 스마트회의실(20층) |      |           |
| 사업명     | 중랑구 상봉동 100번지 일대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보고)           |      |           |
| 신청위치    | 중랑구 상봉동 100번지 일대                             |      |           |
| 의결번호    | (구조)2022-15-1                                | 심의결과 | 조건부(보고)완료 |

## [심의 내용] 구조안전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보고)완료” 되었으며 심의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구조안전 분야>

- 시추조사 및 탄성파시험이 건물 하부가 아닌 외곽에서 진행되어 내진설계를 위한 지반 등급 및 기초 형식의 결정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고 지진 시 건물 하부 지반에 의한 증폭이 건물 상부로 전달되는 것을 고려하면 탄성파시험은 건물 하부에서 실시해야 하므로 건물 하부의 탄성파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내진 설계범주와 횡력저항시스템을 결정하기 바람(※ 본 위원회의 확인을 받기 바람).
- Long-Term Creep and Shrinkage에 의한 고층 건물의 콘크리트기둥과 코어벽체의 Differential Shortening은 사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Creep and Shrinkage가 고려되어야 할 부분(하중이 불균형한 엘리베이터 주변 등)들을 확인 후 검토하기 바람(※ 본 위원회의 확인을 받기 바람).
- 층이 깊은 전이매트와 기초판의 전단보강근을 Cross Tie형식으로 설계할 경우 시공 중 하부주근과의 결속불량으로 설계전단강도가 손실되므로 전단보강근을 U형으로 설계하여 시공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영하기 바람.
- 전이 PIT층의 전이매트(1800mm)에서 전이매트의 단부 테두리, 개구부 주위, 벽체와 접하는 부위는 폐쇄형보를 설치하여 전이매트의 상하부 주철근이 정착되어 전이매트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보배근을 추가하여 상부 벽체의 집중하중에 의한 전이매트의 응력집중과 부등처짐을 최소화하기 바람.
- 전이층 구조시스템이 전이보 형식에서 전이매트 형식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관련 구조도면을 수정하기 바람. (계속)

- 지상 4층부터 지붕까지 테두리 4면에 배치된 구조벽체가 내외부로 Set Back 됨에 따라 전환되는 슬래브에 대한 집중하중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바람.
- 2방향 슬래브의 위험단면에서 슬래브 철근간격이 최대 300mm가 초과되지 않도록 검토하기 바람.
- 기초형식을 결정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등의 경우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며, 동조 제7항에 따라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시행자 또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공 시 협력에 대한 계약서를 제출하고, 당해 건축구조기술사는 시공 시 협력에 대한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여 구조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끝.

2022. 9. 7.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